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국제사법상 쟁점-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 나 2065729 판결을 중심으로-

Private International Law-Related Issues in Connection with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Seoul High Court on 16 February, 2017, Case No. 2015 Na 2065729

李圭鎬 (中央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教授)

I. 서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¹은 법규위반 시 국내외 구분이 없이 적용의 강제화를 위한 명문의 규정이 세세하게 있으나 우리의 관련 법제는 사실상 국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 시 보호대책이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거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실체적 사실관계

1. 당사자

1)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구글 Inc.'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¹ Regulation (EU) 2016/679. 이 규칙은 2016년 4월 14일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25일 시행되었다.

² 최승재,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IT법, 법률신문, 2017. 8. 3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692> (최종방문일: 2019년 5월 2일).

한 구글 검색,유튜브,지메일 등 60여 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코리아'라 한다)는 온라인 광고상품 및 서비스와 다이렉트 마케팅(MD)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2)원고 A, 원고 B, 원고 E, 원고 F는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G-mail 등 구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고, 원고 C, 원고 D는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2. 원고들의 정보제공 요청 및 피고들의 조치

1) 원고들은 2014.2.17.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

1. 저의 Google계정상 개인정보,저의 Google계정을 이용한 정보(특히 저의 G◇◇il계정을 이용해 착발신대상,메일의 내용)를 Google이외의 회사,조직 또는 개인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어떤 이유로,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위 정보의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5일 이내에 법무법인 이△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고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구글 Inc.는 2014.2.22.전자우편을 통해 "① 피고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G-mail)의 공급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습니다. ② 피고 구글 Inc.는 오직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합니다. 피고 구글 Inc.의 법무팀은 개별 요청을 모두 검토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광범위한 요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를 거부합니다.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 구글 Inc.는 특정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피고 구글 Inc.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요청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4. 5. 20.피고들에게 다시 원고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서비스 이용정보(메일 착발신 대상,메일내용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제공 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피고 구글 Inc.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피고 구글 Inc.의 2015.2.25.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oogle에서 수집하는 정보

Google은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사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할 광고,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좋아할 것 같은 Youtube동영상 등과 같은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Google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예를 들어,Google서비스 중에는 Google계정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Google계정에 가입할 때 Google은 사용자에게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또한 Google에서 제공하는 공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Google프로필을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이 프로필은 모든 이에게 공개되고 이름과 사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수집하는 정보.

Google은 사용자가 Youtube로 동영상을 본 시점,Google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방문 시점,또는 Google광고 및 콘텐츠를 보고 사용한 시점 등 사용하는 서비스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기 정보

Google은 하드웨어 모델,운영체제 버전,고유 기기 식별자,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전화번호 포함)와 같은 기기별 정보를 수집합니다.Google은 기기 식별자 또는 전화번호를 Google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로그 정보

Google서비스를 사용하거나 Goog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볼 때 Google은 서버로그에 특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Google서비스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예:검색어)

전화 로그 정보(전화번호,발신자 번호,착신전화 번호,통화 일시,통화 시간,SMS라우팅 정보 및 통화 유형)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기기 이벤트 정보(다운, 시스템 활동, 하드웨어 설정, 브라우저 유형, 브라우저 언어, 요청 날짜 및 시간, 참조 URL)

사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Google계정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쿠키

○ 위치 정보

사용자가 Google서비스를 사용할 때 Google에서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Google은 IP주소,GPS뿐 아니라 주변 기기, Wi-Fi액세스 포인트,기지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센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합니다.

○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번호

일부 서비스에는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번호가 포함됩니다.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또는 자동 업데이트 요청 등을 위해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Google서버에 연결할 때 이 번호 및 운영체제 종류,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 등 설치 관련 정보가 Google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로컬 저장소

Google은 브라우저 웹 저장소(HTML 5포함)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 등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자의 기기에 로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쿠키 및 익명 식별자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방문할 때 Google과 Google 파트너는 사용자의 기기로나 이상의 쿠키 또는 익명 식별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또한 사용자가 Google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다른 사이트에 표시되는 Google기능이나 광고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때 쿠키와 익명식별자를 사용합니다.비즈니스 및 사이트 소유자는 Google 애널리틱스 제품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및 앱의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DoubleClick 쿠키를 사용하는 Google의 광고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Google 애널리틱스 정보가 Google 기술을 통해 여러 사이트의 방문 기록에 대한 정보와 연결됩니다.

Google에서 공유하는 정보

Google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Google이외의 회사, 조직 및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Google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Google이외의 회사,조직 및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Google은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합니다.

○ 도메인 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

도메인 관리자가 Google계정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예:Google Apps사용자)조직에 사용자 지원을 제공하는 도메인 관리자 및 리셀러는 사용자의 Google계정 정보(이메일 및 기타 데이터 포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도메인 관리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관련 통계 조회(예: 사용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통계)

○ 계정 비밀번호 변경

○ 계정 액세스 일시 중지 또는 해지

○ 계정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액세스 또는 보관

○ 관련법, 규정, 법적 절차 또는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계정 정보 수집

○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기능 제한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 관리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처리가 필요한 경우

Google은 Google 계열사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에게 Google 지침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기타 기밀 및 보안 관련 조치를 준수하면서 Google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필요한 경우

Google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 이용, 보존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Google이외의 회사,조직 또는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 관련법, 규제, 법적 절차 및 강제력이 있는 정부 요청의 준수

○ 서비스 약관 위반 조사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 약관 집행

○ 사기,보안 또는 기술적 문제를 감지,예방 또는 해결

○ Google, Google 사용자,일반 대중의 권리,재산,안전을 위협 요소로부터 보호

Google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집계 정보를 대중 및 Google 파트너(예:게시자,광고주 또는 연결

된 사이트)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은 Google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용 경향을 보여주는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인수, 합병, 또는 자산의 매각이 있을 경우 관련 개인정보의 기밀을 계속 유지하며, 개인정보가 타사에 전달되어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적용을 받기 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미리 공지합니다.

III. 절차적 사실관계

2014. 2. 10.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 6인(A, B, C, D, E, F)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및 구글코리아(유한회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및 제4항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자신들에 대한 구글 계정상의 개인정보와 구글 계정을 이용한 정보(특히 Gmail 계정을 이용해 착발신된 메일의 착발신 대상, 메일의 내용)를 구글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제공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의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 측의 답변에 대해서 2014. 7. 23. 위 활동가 6인은 구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앞선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IV.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판결)

(1) 법원은 이용자가 구글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미국의 주(州)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다라도 이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구글 본사에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구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현황 공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용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6명 가운데 구글이 제공하는 개인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메일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2명(C, D)의 청구는 각하했다. 기업메일 서비스는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의 보호대상인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들 2명(C, D)은 구글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정보제공내역 공개의무의 기초로 다음을 들었다. ①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과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라도 이런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 ② 구글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정보통신망법에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한다(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일정한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거나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서 구글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피고 구글 Inc.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면서 발생하는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구글 Inc.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 제재도 피고 구글 Inc.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피고 구글 Inc.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구글 Inc.가 구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원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은 항소취지를 제출하였다.

"피고 구글 인코레이티드는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C, D에게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 C, D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원고 A, B, E,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라,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1) 원고 C, D는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원고 E, F는 자신들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G 한국지부(G)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단체명인 'H'가 메일 계정 아이디에 들어가도록 조합하여(원고 E: I, 원고 F: H) 구글 개인 메일 계정을 만들고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C, D, E, F는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A, B는

개인적으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보통신방법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보려면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정보통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정보통신방법상 이러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준거법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관철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모든 소비자계약에 정보통신방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방법은 그 입법목적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정보통신방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방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하지만, 정보통신방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방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그 위반 시의 제재(정보통신방법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정보통신방법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면 정보통신방법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방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용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방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보통신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등 공개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30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 제7항,제31조 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적어도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고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구글코리아의 주장과 같이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주체가 피고 구글 Inc.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고,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며,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그 서비스 제공 주체를 피고 구글코리아로 표시하면서 '이용자는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 구글코리아를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로 표시한 이상,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도 부담할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2017년 7월 10일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V. 해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론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³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⁴ 이러한 입장은 법정지의 국제민사소송법규에 의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⁵

³ 특히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 다 17539 판결[손해배상(기)]). 아울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 다 21737 판결[집행판결]에서도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그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 다 39607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제조물 공급자 등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그 외국 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그 법정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플로리다 주에 본점을 둔 갑 기업이 국내 기업인 을 주식회사가 미국 뉴욕 주에 본점을 둔 병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작·수출한 전기압력밥솥을 다시 구매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였다가 위 밥솥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다음 을 회사와 그로부터 분할·설립된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 회사로 하여금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정 회사와 미국 뉴욕 주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⁵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합의된 곳 이외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바로 그 장소가 법정지로 될 것이므로, 법정지는 합의의 시점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불확정되어 있는 법정지의 국내민사소송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용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민사절차규정(Code of Civil Procedure) 제395.5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일반 관할권이 존재하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은 위 캘리포니아법상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제2심 법원은 논거를 추가하여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용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분쟁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민사절차규정(Code of Civil Procedure) 제395.5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일반 관할권이 존재하고 [중략]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글 Inc.의 주된 영업지(Principal Executive Office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은 위 캘리포니아법상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 일방인 피고 구글 Inc.가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글 서비스의 제작·운영 등 주요 부분이 피고 구글 Inc.본사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외국 법원에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이용자들이 위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시간,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일응 구글 서비스 이용자와 피고 구글 Inc.사이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 국내 이용자들이 위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비자계약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1) 소비자계약상 소비자의 정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통설과 같이 법정지의 국제민사소송법에 의하는 견해도 미리 법정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정지의 국내민사소송법에 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의] 통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제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고유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분쟁 후의 관할합의 및 소비자에게만 법정지 선택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식으로 전속적이지 않은 관할합의의 경우라면, 통상 그 관할합의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이병화, 이병화,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 21 권 제 1 호(2015. 6.), 370 면).

한국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란 개념은 수동적 소비자에 국한되고 능동적 소비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⁶ 여기에서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이어야 한다. 국제사법 제27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후적 합의만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전 합의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제27조 (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국제사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소비자계약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자의 이익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이른바 '수동적 소비자'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은 " 피고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은 물론, 광고가 행해지는 공간인 검색엔진과 관련된 활동은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주체의 영리행위로 볼 것인데 피고 구글 Inc.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게재하는 검색엔진

⁶ 石光現,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년, 326면; 이병화, 전계논문, 357면.

등을 운영하는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바, 피고 구글 In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국내의 구글 서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국제사법 제27조 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이 반드시 소비자의 상대방이 유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소비자의 상대방인 피고 구글 Inc.가 구글 서비스와 같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제사법 제27조 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의 소비자가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무상 용역을 제공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소비자계약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2006.12.7.선고 2006다53627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 할권을 배제하기로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 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의 소비자는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은 그 보호대상을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C, D 이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E, F은 자신들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G 한국지부(G)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단체명인 'H'가 메일 계정 아이디에 들어가도록 조합하여(원고 E:1, 원고 F: H) 구글 개인 메일 계정을 만들고 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C, D, E, F은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A, B은 개인적으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구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 소비자가 이를 계약체결 당시의 개인적인 목적 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하여 소비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 원고 A, 원고 B는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는 구글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의 피고 구글 Inc.에 대한 소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의료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각종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되는 바, 향후 이 판결은 소비자가 구글 서비스를 계약체결 당시의 개인적인 목적 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사용한 경우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준거법의 선택

(1) 준거법에 관한 합의의 일반론

국제사법 제1조 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31.선고 2004다26454판결 등 참조). 제2심 법원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에 구글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위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의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구글 Inc.가 취득한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의 구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구글 서비스 약관상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의 효력은 일응 이 사건에도 미친다."라고 판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7조 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정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 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 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보려면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준거법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관철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모든 소비자계약에 정보통신망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그 입법목적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정보통신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사항은 국제사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다만, 국내법의 입법 취지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해당 국내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변경되면 국제사법 제7조가 적용되게 될 것이다. GDPR의 역외적용을 의도한 유럽연합법제와 같이 우리 실질법이 개정된다면 국제사법 제7조가 적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3)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여기에서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국내적 강행법규를 의미한다."⁸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

⁷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에서는 "당사국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롯하여 당사국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및 동 입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공질서 조항의 적극적인 활용과 법정지 이외의 제3국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당사자가 선택한 법도 아니고 법정지법도 아니면서 계약관계와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는 제3국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특별한 연결을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설명한 논문으로는 김원규, "국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제한에 관한 연구-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27집 (2007. 8. 25.), 478면이 있다.

⁸ 석광현,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1호(2016. 6.), 41면; 이에 반해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강

3자 제공 현황 등 공개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30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 제7항,제31조 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 사건 제2심 법원에서는 A, B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미국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법인)는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제2심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용자

행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이병화, 전계논문, 371면.

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 B와 구글인코퍼레이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글 인코퍼레이트는 미국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여부

국제사법 제8조는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포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⁹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¹⁰

3. .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 판결은 " 피고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업무 또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구글 서비스도메인 주소의 등록 명의자가 피고 구글코리아로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피고 구글코리아가 된다거나 피고 구글코리아가 피고 구글 Inc.와 공동으로 각종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고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용이성을 감안하고 한국 내 서버를 두지 않으면서 유한회사만 둔 구글 인코퍼레이트의 조치,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IV. 평석

1. 구글 서비스를 개인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직업적 내지 영업적 활동의 용도로 이용한 이용자는 소비자인지 여부

⁹⁹⁹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박영사, 2019년, 162면.

¹⁰ 위의 책, 162면.

의료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각종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되는 바, 향후 이 판결은 소비자가 구글 서비스를 계약체결 당시의 개인적인 목적 외에 업무상 목적으로도 사용한 경우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¹

2. 국내 기업인 구글 코리아(유한회사)로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하고(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한다. 한편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제6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위치정보 등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구글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치정보 처리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공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문제될 경우 고려할 사항

링프리 유에스에이 코퍼레이션(Ringfree USA Corp.)과 링프리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Ringfree International Corp.)이 주식회사 링프리 외 피고 1인(B)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

¹¹ 소비자계약을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유상계약에 한정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문언에는 반하지만 목적론적 축소(또는 축소해석)에 의하여 도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로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박영사, 2019년, 134면.

법원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에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에 따른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변호사보수 및 비용(attorneys' fees and costs)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¹²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08. 8. 19.부터 8. 22.까지, 8. 26.부터 8. 28.까지 배심 재판을 하였고, 배심원단은 2008. 8. 28.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다.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08. 10. 21. 원고들의 특정이행 명령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고, 2009. 1. 12. 원고들의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09. 1. 15.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의 특정이행 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변호사보수 및 비용 미화 940,378.32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미국 판결의 국내승인 및 집행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에서는 계약의 특정이행 명령의 승인에 대하여 상호보증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¹²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링프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화 또는 휴대폰 통신대기시간 중에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ringback tone)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2. 12. 7.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 이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라고 한다)과 미국, 캐나다에서 피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한 권리를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의 대표이사인 소외 A는 2002. 12. 9.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44.5%, 원고 링프리 유에스에이가 40%, 소외 B가 11%, 소외 A가 4.5%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회사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에 자신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통신대기시간 중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모든 외국 및 국내의 특허출원, 특허권을 이전, 양도 및 인도하며, 여기에는 위 방법 또는 장치에 관련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이러한 방법 또는 장치에 관련된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전부 또는 일부), 이러한 특허출원에 발급되는 특허권 및 그 연장, 재발급, 재심사 또는 이의 기간연장,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권 및 특허출원과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보수 및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비용과 경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 링프리 인터내셔널에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래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에 따른 특정이행 및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대상판결 중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특정이행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이행 명령 부분'이라고 한다)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이를 기각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3장 제1713조 내지 제1724조에서 채택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통일승인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통일승인법에서 외국의 비금전판결 중 이혼이나 부양 등의 가사관계 판결에 한하여 예양(comity, 禮讓)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정이행 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일승인법은 외국판결 중 일정한 금전지급을 명하거나 이를 기각한 판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제1723조(유보조항)에서 '외국의 비금전판결에 관하여 예양 등의 원칙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보통법(common law)에 기초한 예양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① 외국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적·물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② 피고가 해당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적정한 송달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에 받았으며, ③ 재판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고, ④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비금전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상호보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에서는 특정이행 명령 부분의 집행권원 적격성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참조).”라고 하면서 “한편, 미국법원은 손해배상(Damages)이 채권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형평법(equity)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의무 자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참조). 이러한 특정이행 명령의 법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입법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형식이나 기재방식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이 판결은 “이 사건 특정이행 명령 부분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의 특정이행 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합의각서 등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외국 및 국내의 특허출원, 특허권 등’을 총 망라하는 것으로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와 같이 특정이행의 대상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이 사건 특정이행 명령의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밖에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에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은 특정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특정이행 명령을 구하는 재판에 종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이행 명령 부분과는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이 내린 특정이행명령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호보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면서 특정이행의 대상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집행적격성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용을 공개하라는 우리나라 판결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인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용을 공개하라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한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의 판시사항 논거는 취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금전판결 중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금지판결의 경우에는 공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국제사법

[시행 2016.1.19.] [법률 제13759호, 2016.1.19., 일부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 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 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목록 제2항]

2. 제3자 제공 현황 공개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범위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 중

1) 기본 인적 정보: 이름,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지역정보, 신용카드 정보

2) 하드웨어 모델, 운영체제 버전, 고유기기 식별자,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전화번호 포함) 등 기기정보 일체

3) 이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기기 이벤트 정보(다운, 시스템 활동, 하드웨어 설정, 브라우저 유형, 브라우저 언어, 요청 날짜 및 시간, 참조 URL 등), 웹 기록,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검색어 (음성검색 포함) 등 이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입력한 정보, YouTube로 동영상을 본 시점, Google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방문 시점, Google 광고 및 콘텐츠를 보고 사용한 시점 등 로그 정보(인터넷 사용기록) 일체

4) 이용자의 전화번호, 발신자의 번호, 착신전화 번호, 통화 일시, 통화 시간, SMS 라우팅 정보 및 통화 유형 등 전화 로그 정보 일체

5) IP 주소, GPS, 주변기기, 기기 센서,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 등에 관한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파악한 이용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 일체

6) 고유 애플리케이션 식별번호, 운영체제 버전 및 종류,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 등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 일체

7) 방문한 페이지의 URL, 텍스트의 캐시, 이미지 및 페이지에 있는 기타 리소스, 해당 페이지와 연결된 일부 IP 주소의 목록 검색어 등 브라우저 웹 저장소(HTML 5 포함)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시 등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수집하고 이용자의 기기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한 정보 일체

8)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쿠키 또는 데이터, 부가기능에서 저장한 데이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내역, 이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Google 계정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쿠키, 다른 사이트에 표시되는 Google 기능이나 광고 서비스 등 Google이 파트너 (게시자, 광고주 또는 연결된 사이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있을 때 수집·저장한 쿠키, Google 애널리틱스를 통해 수집·저장한 쿠키, Google이 파트너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Google계정과 연결한 정보, 이용자가 Google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 수집되는 정보 등을 포함하여 Google이 분류한 쿠키 유형 ('관심설정', '보안', '프로세스', '광고', '세션상태', '웹로그분석')에 따라 수집·저장한 이용자의 쿠키 및 익명식별자 일체

나. 이메일 내용, 송수신 날짜, 송수신인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 등 Gmail 서비스이용내역 일체.